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34
----------	-------

발의연월일 : 2019. 6. 26.

발의자 : 민경욱 · 윤재옥 · 송희경
문진국 · 조훈현 · 이현재
박덕흠 · 김성원 · 윤영석
김선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음주·무면허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회사,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가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일정 금액을 구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 할 수 있는 반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사업자의 경우에 는 음주·무면허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그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보험회사등 또는 전문심사기관”을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열람으로”를 “열람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 받은 개인정보로”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관련 단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p>	<p>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u> <u>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u> <u>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u> <u>말한다) 산출 및 보험금등의</u> <u>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u> <u>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u> <u>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u> <u>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u> <u>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u> <u>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u> <u>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u> <u>하여 줄 것을 보유기관의 장에</u> <u>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u> <u>공 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u> <u>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u> <u>응하여야 한다.</u></p> <p><u>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u> <u>따른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u> <u>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u> <u>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치된</u> <u>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u></p>
<u><신 설></u>	

	<p><u>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u>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⑦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u> ----- ----- ----- <u>-----열람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 받은 개인정보로-----</u> -----.</p> <p>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보험회사등 또는 보험관련 단체</u>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 ② ~ ⑦ (생략)</p> <p>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p> <p>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 ----- ----- ----- <u>-----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u> ----- ----- ----- <p>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p><p>제46조(벌칙) ① ----- ----- ----- -----.</p></p>
--	--

<p>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1. <u>제14조제5항</u>을 위반하여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p> <p>2. ~ 4. (생략) ② · ③ (생략)</p>	<p>----- ----- ----- -----.</p> <p>1. <u>제14조제7항</u>----- ----- ----- ----- ---</p> <p>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	--